제103호
2019-02호
(2019.02.21.)

KLSI
ISSUE PAPER

www.klsi.org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lsiedit

< 요 약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12.5~13.5%)가 3~10분위(5.6~8.7%)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인상액은 1~2분위(648~829원)가 전체 노동자 평균(1,004원)에도 못 미친다.

둘째, 월 임금인상률은 1~4분위(10.8~22.0%)가 5~10분위(1.7~10.2%)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월 임금인상액은 1~4분위(11~25만원)가 7~10분위(17~31만원)보다 낮다. 중간임금 계층(5~6분위)의 임금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낮은 것은, 노조 조직률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0배에서 2018년 3.72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0배에서 4.59배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0.3169에서 0.3092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0.3307에서 0.3282로 감소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5만명(22.5%)에서 311만명(15.7%)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1,116만명(56.6%)에서 1,211만명(61.0%)으로 증가했다. 고임금 계층은 412만명(20.9%)에서 462만명(23.3%)으로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15만명(20.9%)에서 349만명(17.4%)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982만명(49.3%)에서 1,171만명(58.4%)으로 증가했다. 고임금 계층은 593만명(29.8%)에서 484만명(24.2%)으로 감소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 임금인상,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낮아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머리말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7,530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그러자 2018년 한 해 동안 최근 고용사정 악화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되기라도 한 양 여론을 호도하는 '기승전(起承轉) 최저임금'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1].

이 글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2019년 2월 현재 분석 가능한 자료는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가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조사의 분석결과를 비교 검토한다([표 1] 참조).

[표 1] 분석 가능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지역고용조사
조사시점	2017년 8월 - 2018년 8월	2017년 4월 - 2018년 4월
표본샘플수	생산가능인구 61,096명 노동자 25,543명	생산가능인구 387,795명 노동자 140,778명

2. 임금인상

가. 시간당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10.7~10.8%)가 3~10분위(3.2~8.0%)보다 크게 높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2분위(12.5~13.5%)가

1) 자세한 것은 김유선(2019), "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KLSI 이슈페이퍼 제102호) 참조바람.

3~10분위(5.6~8.7%)보다 크게 높다([그림 1]과 [표 2] 참조).

[그림 1] 시간당 임금 10분위별 시간당 임금인상률(2017-2018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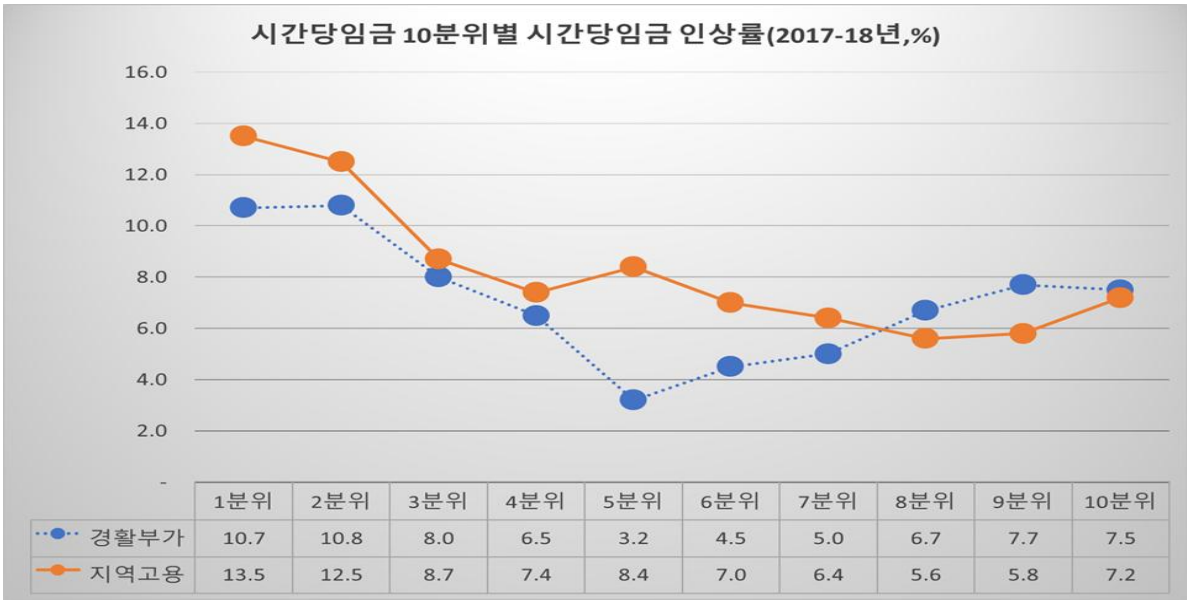

[표 2] 10분위별 시간당 임금 평균값과 인상액, 인상률(2017-2018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지역고용조사(4월)			
	2017년	2018년	인상액	인상률	2017년	2018년	인상액	인상률
1분위	4,736	5,244	508	10.7	4,821	5,469	648	13.5
2분위	6,735	7,463	728	10.8	6,648	7,476	829	12.5
3분위	8,129	8,780	651	8.0	8,053	8,750	697	8.7
4분위	9,314	9,921	607	6.5	9,214	9,898	684	7.4
5분위	10,889	11,241	353	3.2	10,362	11,233	871	8.4
6분위	12,271	12,823	553	4.5	11,775	12,596	822	7.0
7분위	14,251	14,964	713	5.0	13,943	14,842	899	6.4
8분위	17,019	18,160	1,141	6.7	16,645	17,569	924	5.6
9분위	21,503	23,159	1,656	7.7	20,895	22,101	1,205	5.8
10분위	33,789	36,336	2,546	7.5	33,682	36,104	2,422	7.2
전체	13,754	14,607	853	6.2	13,502	14,506	1,004	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지역고용조사(4월).

1~2분위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3~10분위보다 크게 높은 것은,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것은 [표 3]에서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1~2분위에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가 몰려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시간당 임금 10분위별 최저임금 수혜자·미달자와 노조 조직현황(2018년)

시간당 임금 기준	수(천명)			비율(%)			노조		
	최저임금 수혜자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또는 미달자	최저임금 수혜자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또는 미달자	조합원수 (천명)	노조 조직률 (%)	조합원 구성 (%)
1분위	343	2,127	2,127	16.1	100.0	100.0	45	2.1	1.8
2분위	1,883	983	1,883	100.0	52.2	100.0	44	2.3	1.8
3분위	147		147	7.1		7.1	83	4.0	3.3
4분위							121	6.0	4.8
5분위							163	7.8	6.5
6분위							248	13.4	9.9
7분위							324	16.0	13.0
8분위							498	21.2	19.9
9분위							478	27.8	19.1
10분위							493	25.8	19.7
전체	2,373	3,110	4,157	11.8	15.5	20.7	2,497	12.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8년 8월).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인상액은 1~2분위(508~728원)가 8~10분위(1,141~2,546원)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액 평균(853원)에도 못 미친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인상액도 1~2분위(648~829원)가 7~10분위(899~2,422원)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평균값(1,004원)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높아도 임금인상액이 낮은 것은 1~2분위 시간당 임금 평균이 워낙 낮아서인데, 1분위는 물론 2분위 평균값도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친다([그림 2]와 [표 2] 참조).

[그림 2] 시간당 임금 10분위별 시간당 임금 인상액(2017-2018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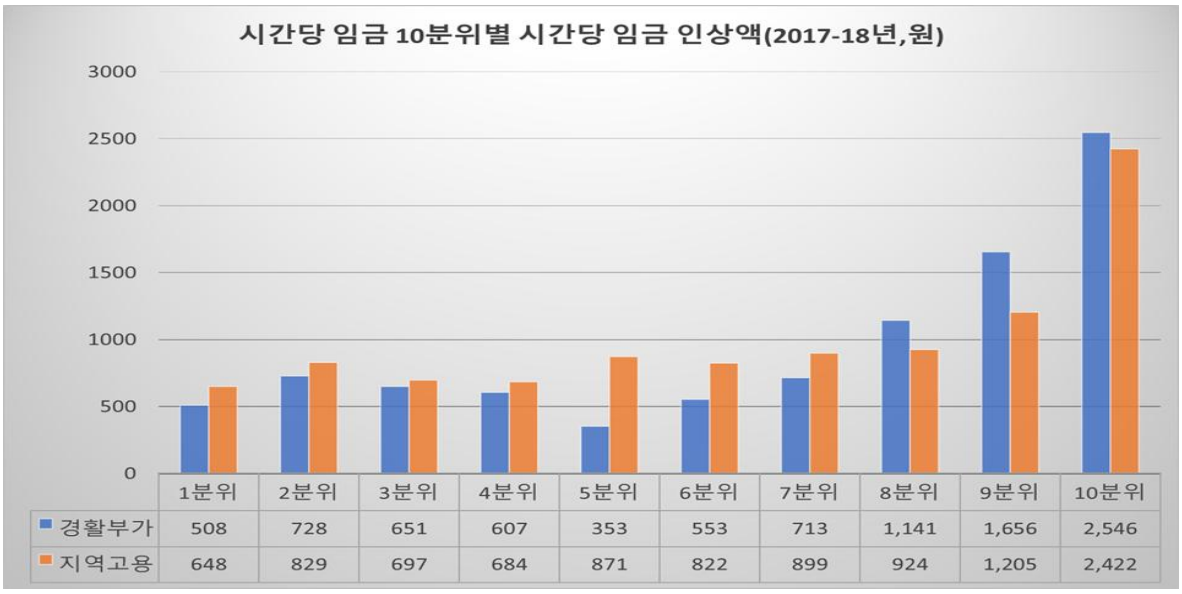

나. 월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높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월 임금인상률도 1~4분위(10.8~22.0%)가 5~10분위(1.7~10.2%)보다 높다([그림 3]과 [표 4] 참조).

[그림 3] 10분위별 월 임금인상률(2017-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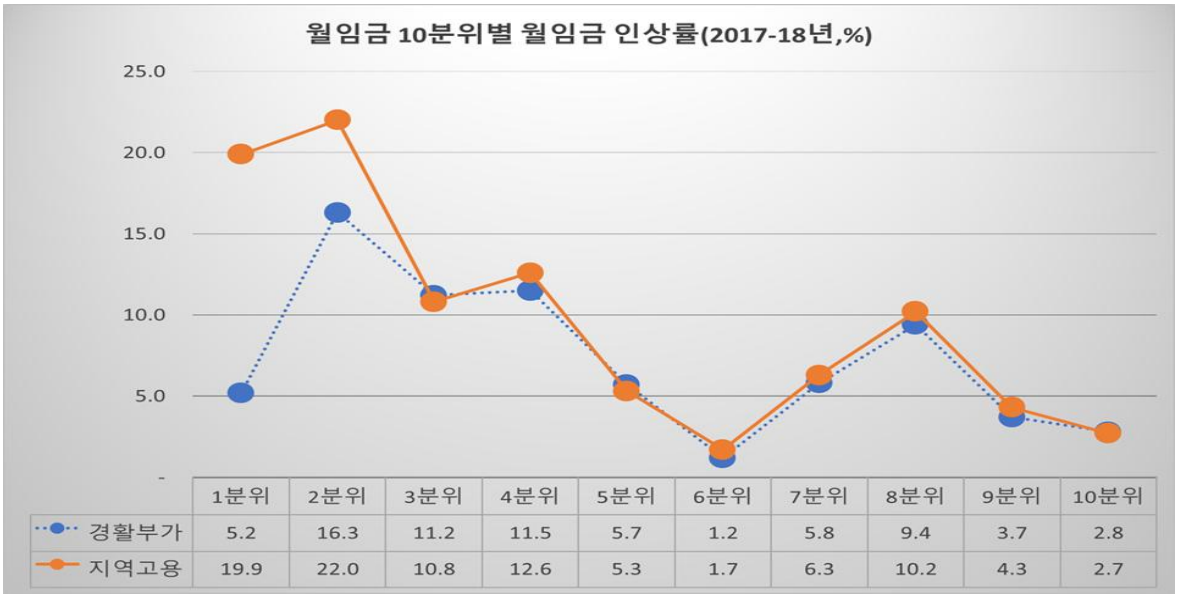

[표 4] 10분위별 월 임금 평균값과 인상액, 인상률(2017-2018년, 단위: 만원, %)

월 임금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지역고용조사(4월)			
	2017년	2018년	인상액	인상률	2017년	2018년	인상액	인상률
1분위	48	51	3	5.2	54	64	11	19.9
2분위	111	129	18	16.3	114	139	25	22.0
3분위	147	164	17	11.2	148	164	16	10.8
4분위	172	192	20	11.5	171	193	22	12.6
5분위	198	209	11	5.7	199	209	11	5.3
6분위	236	239	3	1.2	237	241	4	1.7
7분위	271	287	16	5.8	273	290	17	6.3
8분위	307	336	29	9.4	307	338	31	10.2
9분위	391	405	14	3.7	390	406	17	4.3
10분위	609	626	17	2.8	620	636	17	2.7
전체	243	256	13	5.3	244	258	14	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와 지역고용조사(4월).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월 임금인상액은 2~4분위(17~20만원)가 7~10분위(14~29만원)와 엇비슷하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월 임금인상액은 2~4분위(16~25만원)가 7~10분위(17~31만원)보다 조금 낮다. 이는 2018년에도 1~4분위 월 임금 평균값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그림 4]와 [표 4] 참조).

[그림 4] 월 임금 10분위별 월임금인상액(2017-2018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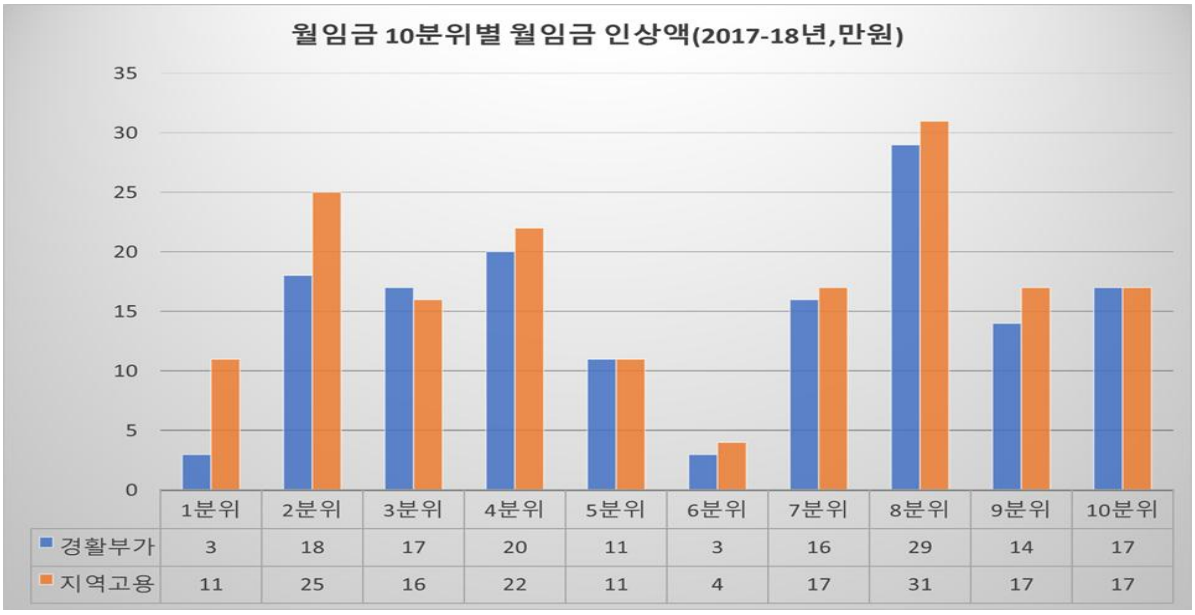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자와 수혜자가 하위 1~2분위에 집중되어 있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1~6분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임금은 낮아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1~2분위 임금인상률이 다른 분위보다 높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2~4분위 임금인상률이 다른 분위보다 높다. 중간임금 계층(5~6분위)의 임금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낮은 것은, 노조 조직률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표 5] 참조).

[표 5] 월 임금 10분위별 최저임금 수혜자·미달자와 노조 조직현황(2018년)

월 임금 기준	수(천명)			비율(%)			노조		
	최저임금 수혜자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또는 미달자	최저임금 수혜자	최저임금 미달자	수혜자 또는 미달자	조합원수 (천명)	노조 조직률 (%)	조합원 구성 (%)
1분위	707	1,431	1,642	34.0	68.9	79.1	15	0.7	0.6
2분위	982	1,253	1,652	35.3	45.0	59.4	79	2.8	3.2
3분위	303	199	399	21.3	14.0	28.1	53	3.7	2.1
4분위	312	208	394	9.2	6.1	11.6	239	7.1	9.6
5분위	28	7	29	7.7	1.9	8.0	31	8.5	1.2
6분위	40	11	40	1.6	0.4	1.6	294	12.0	11.8
7분위	1						426	17.2	17.1
8분위							328	24.7	13.1
9분위							495	28.2	19.8
10분위							536	26.8	21.5
전체	2,373	3,109	4,156	11.8	15.5	20.7	2,496	12.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8년 8월).

3. 임금불평등

가. 시간당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7년 1만3,754원에서 2018년 1만 4,607원으로 853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1만 1,513원에서 변함이 없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시간당 임금은 5,987원에서 6,908원으로 921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2만 4,753원에서 2만 5,905원으로 1,151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13배에서 3.75배로 감소했다. 중위값과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5010)는 1.92배에서 1.67배로 감소했지만, 상위 10% 컷오프와 중위값의 시간당 임금격차(P9050)는 2.15배에서 2.25배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2017년 0.3160에서 2018년 0.3098로 조금 감소했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7년 1만 3,502원에서 2018년 1만 4,506원으로 1.004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1만 1,266원에서 1만 1,513원으로 247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시간당 임금은 5,757원에서 6,908원으로 1,151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2만 3,602원에서 2만 5,688원으로 2,086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10배에서 3.72배로 감소했다. 중위값과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5010)는 1.96배에서 1.67배로 감소했지만, 상위 10% 컷

오프와 중위값의 시간당 임금격차(P9050)는 2.09배에서 2.23배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2017년 0.3169에서 2018년 0.3092로 조금 감소했다([표 6] 참조).

[표 6] 임금불평등 추이 (2017-2018년,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지역고용조사(4월)		
		2017년	2018년	증감	2017상	2018상	증감
노동자수(천명)		20,006	20,045	39	19,903	20,043	140
평균값(원)		13,754	14,607	853	13,502	14,506	1,004
중위값(원)		11,513	11,513	0	11,266	11,513	247
경계값 (원)	하위10%	5,987	6,908	921	5,757	6,908	1,151
	20%	7,420	8,146	727	7,196	8,059	863
	30%	8,635	9,211	576	8,635	9,211	576
	40%	9,786	10,362	576	9,594	10,362	768
	50%	11,513	11,513	0	11,266	11,513	247
	60%	13,158	13,816	658	12,664	13,816	1,151
	70%	15,351	16,118	768	14,967	16,118	1,151
	80%	18,723	20,148	1,425	17,909	19,189	1,279
	90%	24,753	25,905	1,151	23,602	25,688	2,086
임금 불평등	p9010	4.13	3.75	-0.38	4.10	3.72	-0.38
	p5010	1.92	1.67	-0.26	1.96	1.67	-0.29
	p9050	2.15	2.25	0.10	2.09	2.23	0.14
	Gini계수	0.3160	0.3098	-0.0062	0.3169	0.3092	-0.00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와 지역고용조사(4월).

나. 월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월 평균임금은 2017년 243만원에서 2018년 256만원으로 14만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월 임금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월임금은 45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4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격차(P9010)는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 중위값과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격차(P5010)는 2.50배에서 2.33배로 감소했고, 상위 10% 컷오프와 중위값의 월 임금격차(P9050)는 2.25배에서 2.16배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2017년 0.3293에서 2018년 0.3289로 조금 감소했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월 평균임금은 2017년 244만원에서 2018년 258만원으로 14만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월 임금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은 450만원에서 459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격차(P9010)는 5.00배에서 4.59배로 감소했다. 중위값과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격차(P5010)는 2.22배에서 2.10배로 감소했고, 상위 10% 컷오프와 중위값의 월 임금격차(P9050)도 2.25배에서 2.19배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2017년 0.3307에서 2018년 0.3282로 조금 감소했다([표 7] 참조).

[표 7] 임금불평등 추이 (2017-2018년, 월 임금 기준)

월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8월)			지역고용조사(4월)		
		2017년	2018년	증감	2017상	2018상	증감
노동자수(천명)		20,006	20,045	39	19,903	20,043	140
평균값(만원)		243	256	14	244	258	14
중위값(만원)		200	210	10	200	210	10
경계값 (만원)	하위10%	80	90	10	90	100	10
	20%	130	150	20	130	150	20
	30%	154	170	16	150	170	20
	40%	180	200	20	180	200	20
	50%	200	210	10	200	210	10
	60%	250	250	-	250	250	-
	70%	280	300	20	290	300	10
	80%	340	350	10	340	350	10
	90%	450	454	4	450	459	9
임금 불평등	p9010	5.63	5.04	-0.58	5.00	4.59	-0.41
	p5010	2.50	2.33	-0.17	2.22	2.10	-0.12
	p9050	2.25	2.16	-0.09	2.25	2.19	-0.06
	Gini계수	0.3293	0.3289	-0.0003	0.3307	0.3282	-0.00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와 지역고용조사(4월).

4. 저임금계층

가. 시간당 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중위값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1만 1,513원이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428만명(21.4%)에서 2018년 315만명(15.7%)로 113만명(5.7%p) 감소했다. 중간임금 계층은 1,131만명(56.5%)에서 1,206만명(60.1%)으로 75만명(3.6%p) 증가했고, 고임금 계층은 442만명(22.1%)에서 484만명(24.1%)으로 42만명(2.1%p) 증가했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중위값은 2017년 1만 1,266원에서 2018년 1만 1,513원으로 247원 증가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445만명(22.5%)에서 2018년 311만명(15.7%)으로 134만명(6.9%p) 감소했다, 중간임금 계층은 1,116만명(56.6%)에서 1,211만명(61.0%)으로 95만명(4.5%p) 증가했고, 고임금 계층은 412만명(20.9%)에서 462만명(23.3%)으로 50만명(2.4%p) 증가했다([표 8] 참조).

[표 8] 임금불평등 추이 (2017-2018년,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8월)			지역고용조사(4월)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수 (천명)	저임금계층	4,282	3,150	-1,132	4,445	3,110	-1,335
	중간임금계층	11,309	12,056	747	11,160	12,105	945
	고임금계층	4,416	4,840	424	4,120	4,620	499
	전체	20,006	20,045	39	19,725	19,834	109
비율 (%)	저임금계층	21.4	15.7	-5.7	22.5	15.7	-6.9
	중간임금계층	56.5	60.1	3.6	56.6	61.0	4.5
	고임금계층	22.1	24.1	2.1	20.9	23.3	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와 지역고용조사(4월).

나. 월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월 임금 중위값은 2017년 200만원에서 2018년 2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410만 명(20.5%)에서 2018년 359만명(17.9%)로 51만명(2.6%p) 감소했다. 중간임금 계층은 1,007만명(50.3%)에서 1,149만명(57.3%)으로 142만명(7.0%p) 증가했고, 고임금 계층은 585만명(29.2%)에서 496만명(24.8%)으로 88만명(4.4%p) 감소했다.

지역고용조사에서 월 임금 중위값도 2017년 200만원에서 2018년 2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415만명(20.9%)에서 2018년 349만명(17.4%)으로 67만명(3.5%p) 감소했다. 중간임금 계층은 982만명(49.3%)에서 1,171만명(58.4%)으로 189만명(9.1%p) 증가했고, 고임금 계층은 593만명(29.8%)에서 484만명(24.2%)으로 109만명(5.6%p) 감소했다([표 9] 참조).

[표 9] 임금불평등 추이 (2017-2018년, 월 임금 기준)

월 임금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8월)			지역고용조사(4월)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수 (천명)	저임금계층	4,096	3,591	-505	4,154	3,490	-665
	중간임금계층	10,065	11,489	1,424	9,816	11,710	1,893
	고임금계층	5,845	4,964	-880	5,932	4,843	-1,089
	전체	20,006	20,045	39	19,903	20,043	140
비율 (%)	저임금계층	20.5	17.9	-2.6	20.9	17.4	-3.5
	중간임금계층	50.3	57.3	7.0	49.3	58.4	9.1
	고임금계층	29.2	24.8	-4.4	29.8	24.2	-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와 지역고용조사(4월).

5. 맺는 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12.5~13.5%)가 3~10분위(5.6~8.7%)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인상액은 1~2분위(648~829원)가 전체 노동자 평균(1,004원)에도 못 미친다.

둘째, 월 임금인상률은 1~4분위(10.8~22.0%)가 5~10분위(1.7~10.2%)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월 임금인상액은 1~4분위(11~25만원)가 7~10분위(17~31만원)보다 낮다. 중간임금 계층(5~6분위)의 임금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낮은 것은, 노조 조직률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0배에서 2018년 3.72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0배에서 4.59배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0.3169에서 0.3092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0.3307에서 0.3282로 감소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5만명(22.5%)에서 311만명(15.7%)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1,116만명(56.6%)에서 1,211만명(61.0%)으로 증가했다. 고임금 계층은 412만명(20.9%)에서 462만명(23.3%)으로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15만명(20.9%)에서 349만명(17.4%)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982만명(49.3%)에서 1,171만명

(58.4%)으로 증가했다. 고임금 계층은 593만명(29.8%)에서 484만명(24.2%)으로 감소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 임금인상,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낮아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